

---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재학생/교직원 연1회, 1시간이상 필수 이수

1.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swiss.swu.ac.kr)
2. 학사관리-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권한에 따라 메뉴가 그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WU portal interface. At the top right, the 'Academic Management' (학사관리) menu is circled in red. Below it, the 'Mandatory Education' (법정의무교육) menu item is highlighted in a dark grey bar, and its sub-item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장애인식개선교육) is circled in red.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y menu' section with various system links like '수업시스템', '수강시스템', etc. The right sidebar shows '공지사항' (Notice) and '온라인미팅' (Online Meeting) sections.

### 3.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클릭)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하였으며 YOUTUBE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교육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근거 및 법률내용**

1. 법적근거 및 주관부서

No	법적근거	주관부서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2016.06.30.)	보건복지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018.05.29.)	고용노동부

2. 교육내용

학생용·교직원 공통 : 인식의 길라잡이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클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수

**저장**

▶ 교육이수현황

No	이수시기	이수구분	이수일자
1	2025학년도 2학기	이수	2025-12-30

## 4. '이수' 선택 후 하단 '저장' 클릭

**교육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법정 의무교육 근거 및 법률내용

1. 법적근거 및 주관부서

No	법적근거	주관부서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2016.06.30.)	보건복지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018.05.29.)	고용노동부

2. 교육내용

학생용·교직원 공통 : 인식의 길라잡이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클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수

**저장**

**교육이수현황**

No	이수시기	이수구분	이수일자
1	2025학년도 2학기	이수	2025-12-30

## 5. 하단 '교육이수현황'에서 교육이수내역 확인 가능

교육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법정 의무교육 근거 및 법률내용

1. 법적근거 및 주관부서

No	법적근거	주관부서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2016.06.30.)	보건복지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018.05.29.)	고용노동부

2. 교육내용

학생용·교직원 공통 : 인식의 길라잡이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클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수

저장

### 교육이수현황

No	이수시기	이수구분	이수일자
1	2025학년도 2학기	이수	2025-12-30